

#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4 6 8
--------	--------	-------

제출년월일 : 1998. 3. 13.

제 출 자 : 고성군수

## 1. 개정사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개정(1997. 3. 7, 법률 제5301호)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등 동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가정오수처리에 있어 오수정화시설·정화조의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단독정화조로 세분하여 규정한 바 이를 조례에 명시 함.(안 제2조)

나.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던 과태료 업무를 동 조례에서 부과·징수토록 하고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 함.(안 제6장, 부칙 제2조)

다. 방류수수질기준 위반등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금액을 상향조정 함.(안 별표5)

## 3. 관련근거

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1997. 3. 7, 법률 제5301호)

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중 개정(1997.12.4 환경부예규 제167호)

##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를 준용한다
2. "오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를 말한다
3.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4. "가축사육"이라 함은 1마리이상의 사육(계속적인 보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2 장 오수 및 분뇨의 처리

제4조(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관리) ①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법 제28조3항 및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상가동되고 있는 합병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간이 도래 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는 합병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크럼이 생성된 경우에는 모든 부위의 오수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투입하여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단독정화조의 내부침소는 부패조의 스크럼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 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①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운반업무 수행시 지역별로 일정을 조정하는등 원활한 수집·운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주민의 분뇨수거 요청이 있을경우 제1항의 규정에 우선하여 수거처리함으로써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①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함에 있어서 농촌성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뇨의 수집·운반 업무에 있어서는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오니는 동항 제3호에서 규정한 정화조 청소업자가 대행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대행 계약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군수의 분뇨처리동에 관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 군수는 법 제1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6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부적정 오수처리시설 신고)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는자는 오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이 용량 및 제조업자의 표시등을 하지 않은 부적정 제품이거나 유지관리 또는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장 가축사육 제한등

제9조(사육제한 지역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의 전부제한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②별표2의 일부 제한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다.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등에서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안에 부설하는 계류장
4.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허가절차등)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육지 위치도 1부
2. 도시계획 확인원 1부

- ② 군수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③ 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 받은자는 이를 축사에 게시 하여야 한다.
- ④ 가축사육허가를 받은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피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⑤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자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4장 분뇨처리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

제11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와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 1. 분뇨수집수수료

분뇨수집수수료는 별표3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관련영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2. 오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단독정화조의 오니청소 수수료는 별표4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3. 분뇨처리장 사용료

분뇨 또는 청소오니를 분뇨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위생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3과 별표4에서 규정한 처리비를 사용료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일괄 부과·징수 한다.

제12조(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 동을 위생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3과 별표4에서 규정한 처리비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한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자
2.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자
3. 기타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자

②처리장 처리비는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수거시 징수한 처리장 사용료를, 자체 청소 의무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처리비를 군수에게 각각 납부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적용을 받는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 마다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날 까지 군수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 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당일분 반입량을 업체별로 구분하여 사용료 납부통지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처리장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징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사용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처리장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분뇨반입시 처리장의 관계 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처리장에서 회수한 전표는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당일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분뇨동관련영업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13조(분뇨처리장 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4조(포탈된 처리비의 과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포탈된 금액의 5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 제5장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등

제 15조(분뇨동관련영업)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동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분뇨관련영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군수는 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동관련영업의 허가를 할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영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및 청소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군수는 분뇨수거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뇨동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인력, 장비, 설비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 16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분뇨동관련영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의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 및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분뇨의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의 적정동에 관한 사항
3. 기타 분뇨의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에 수반되는 업무

## 제6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청문)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 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준용한다.

제19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군수는 과태료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에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항에 대하여 피 처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 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과태료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2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장 보 칙

제23조(업무의 위임·위탁) ①군수는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의 예정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의 오수의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를 따라 처리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조례 제1342호, 1993. 8. 28)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허가를 받은자의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 전 부 제 한 지 역

읍 면	지 역 명	금 지 구 역
고 성 읍	성 내 리	성내리 전역
	서 외 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수 남 리	·
	동 외 리	·
	송 학 리	·

[별표 2]

## 일 부 제 한 지 역

읍 면	지 역 명	금 지 구 역
고 성 읍	교 사 리	교사리 전역
	서 외 리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
	수 남 리	·
	동 외 리	·
	송 학 리	·
	울 대 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기 월 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별표3]

### 분뇨수집수수료

부과대상	부과기준	계	수거료	수수료
분뇨	0.1㎡당	1,200원	1,000원	200원

[별표4]

###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

구분	부과기준	계	청소료	수수료
기본요금	0.75㎡	12,000원	10,500원	1,500원
초과요금	매 0.1㎡당	1,028원	828원	200원

## 과 목 료 부 과 기 준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 리에관한법률	1.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5조)	500	700	1,000
	2.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 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아니 한 자(법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 2항, 제10조제2항)	300	400	500
	3.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준공검 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법 제12조, 제26조, 제33조제2항)			
	가.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하는 경우	500	700	1,000
	나.준공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고 도 계속 사용한 자	1,000	1,000	1,000
	4.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 경을 당해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자 또는 수질환 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 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게 말긴자(법 제13조제1항, 제13조 의2제1항, 제22조, 제27조)	1,000	1,000	1,000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 리에관한법률	5.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기의 건축 물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 경한 자(법 제13조제2항)	500	700	1,000
	6.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그 관 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 관리한 자(법 제14조제2항, 제 28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	500	700	1,000
	7.축산폐수저류조를 설치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법 제33 조제3항)	500	700	1,000
	8.간이오수정화조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5조제1항)	500	700	1,000
	9.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 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법 제24조제2항)	300	400	500
	10.신고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 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24 조제4항, 제5조)	500	700	1,000
	11.분뇨동관련영업 또는 분뇨처리시 설 등의 설계·시공업과 관련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로 변경신고를 한 자(법 제35조제1, 제38조제1항)	300	400	500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 리에관한법률	12.분뇨동관련영업의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법 제35 조제3항)	500	700	1,000
	13.분뇨동관련영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35조의2제2항)	300	400	500
	14.분뇨동관련영업자로서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여 요금을 받은 자(법 제35조의3제 1항)	500	700	1,000
	15.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입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제 2항)	300	400	500
	16.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법 제42조제3항)	500	700	1,000
	17.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제1항)	500	700	1,000
	18.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 분뇨동 관련영업자로서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장소, 수집량 및 처리상황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법 제44조)	300	400	500
	19.분뇨동관련영업자, 설계·시공업 자 또는 정화조제조업자로서 휴업	300	400	500

죄 종 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 리에관한법률	· 폐업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5조)			
	20.사업자,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 활용하는 자, 분뇨등관련영업자, 설계·시공업자, 정화조제조업자로 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법 제46조제1항)	300	400	500
	21.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3 제2항)	200	300	500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4. 방류수 수집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제거율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로 한다.

5.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가 축 사 육 허 가 증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육장 소재지							
구 분	축 사			사 육 두 수			비 고
	부지면적	동 수	건평(㎡)	계	성 축	자 축	
축 종							
허가기간							
<p>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p> <p style="margin-top: 50px;">199    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50px;">고   성   군   수                      직인</p>							

# 고 성 군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오수·본노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 조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오수·본노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직 인

(개인 통지용)

<b>제 호</b> <b>과태료납부통지서</b>		
위반사항: 오수·분노및축 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 조제 항		
납 부	성 명	
의무자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과태료는 오수·분 노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고성군금 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수납은행 보관용)

<b>제 호</b> <b>과태료납부통지서</b>		
위반사항: 오수·분노및축 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 조제 항		
납 부	성 명	
의무자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고성군 통보용)

<b>제 호</b> <b>과태료납부통지서</b>		
위반사항: 오수·분노및축 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 조제 항		
납 부	성 명	
의무자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고 성 군 수 귀하		

(개인 보관용)

<b>제 호</b> <b>과태료납부통지서</b>		
위반사항: 오수·분노및축 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 조제 항		
납 부	성 명	
의무자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호
의 무 자	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반사항			
⑥ 과태료금액		⑦ 당초납부 기 일	
<p style="text-align: center;">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균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고   성   관   수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10px;">직 인</span></p>			

제 호

###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① 고지금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직 인



[별지 제8호서식]

계 호

수 신 발 신 고 성 군 수 (인)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오수·분노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오수·분노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제 기 자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 번 호	
	②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 고 지 일 자		⑤ 과 태 료 금 액	
	⑥ 부 과 기 간		⑦ 이 의 제 기 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 과태료수납부

① 고지 번호	② 과태료처분 통지일	③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⑥ 금액	납부 의무자		⑨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⑫ 위행 반위
			④ 당초	⑤ 독촉		⑦ 성명	⑧ 주소		⑩ 이의제기일	⑪ 법원통보일	